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
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및 침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규정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(법률 제19719호, 2023.9.14. 제정·공포, 2024.3.1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침수방지시설의 종류(안 제2조)

- 법에 규정된 하천 및 하수도 시설 외에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시설, 도시침수 예보시설 등을 침수방지시설로 정의

나.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(안 제3조, 5조)

-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기본 계획의 관보 고시 내용 등 기본계획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함

다. 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 절차(안 제4조)

-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함

라. 설계기준 강화 대상지역과 그에 따른 절차 규정(안 제10조)

-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, 인구 또는 산업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계기준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을 권고토록 함

마.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(안 제12조)

- 시·도지사가 매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,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함

바. 도시침수예보의 실시(안 제15조)

-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,
- 도시침수예보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·소방서장 및 주민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13. 11. 20. ~ 12. 30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침수방지시설) 「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
2.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
3.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(이하 “도시침수예보시설”이라 한다)
 - 가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수위 및 유량을 관측, 측정, 조사, 분석하는 시설
 - 나. 도시하천 구역의 침수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침수계
 - 다.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하천의 수위, 수량 및 하천구역의 강수량 등을 관측, 측정, 조사, 분석하기 위한 시설

4. 침수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설
5. 그 밖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제3조(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)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
2.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3. 법 제8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·시행 주체에 관한 사항
4.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
2. 계산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3.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
제4조(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

이 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관할 내 도시하천 유역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등으로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시·도지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,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고시)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목적
2.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4. 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여부
2. 사업의 명칭, 목적, 개요
3. 사업 대상 침수방지시설의 종류·명칭 및 용량
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의 조서,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(필요한 경우만 포함한다)
6. 연차별 추진계획
7.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7조(시행계획의 고시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목적
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

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계획의 기술검토)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각 호의 전문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1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2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원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
5.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
6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제9조(기본계획 등의 추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침수방지사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1.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
2. 인구 밀집지역, 자산 밀집지역,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도시침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권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침수방지시설의 활용) 법 제 10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12조(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(이하 “시·군·구 실적 보고서”라 한다)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
2. 사업별 공정률 및 잔여공정 추진계획(소요예산을 포함한다)
3.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대책
4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·시정 요청 조치현황
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·도 침수방지시설 사업 및 집행실적 보고서(이하 “시·도 실적 보고서”라 한다)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 실적 보고서에 소속 시·군·구 실적 보고서를 반영해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의 집행실적 관리 등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침수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)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도시하천 유역 내 소관 침수방지시설이 최적관리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·관리하는 침수방지시설의 운영상황 및 유지관리 상태 등 침수방지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강우 등으로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도시하천 유역 내에 있는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점검 주기, 점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「하천법」, 「하수도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하여 점검하도록
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점검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물재해종합상황실(이하 “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설치·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홍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신속한 수집·전파와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추는 것
2.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·장비, 비상운영체계 등 운영·관리체계를 갖추는 것
3.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

② 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상황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15조(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하천, 하수도의 실측 및 예측수위에 관한 정보
2. 강우 시 하천, 하수도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위험 및 침수범위에 관한 정보

3. 그 밖에 도시침수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 예보 시 방송·신문 등의 통신매체,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,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
⑤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(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시설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도시침수예보시설은 침수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자료가 기록·전송되는 것이어야 한다.

③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·운영·유지·관리 및 검정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17조(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센터(이하 “예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예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설치·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신속한 하천 및 도시 침수 위험 정보의 수집·전파와 침수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추는 것
2. 침수 위험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그 운영·관리체계를 갖추는 것
3. 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
4.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

③ 그 밖에 예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18조(권한 등의 위임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·고시 및 통보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·고시 및 재원협약에 관한 사항
3. 법 제9조에 따른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권고에 관한 사항
4. 법 제12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5. 제13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구축·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
2.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제16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·관리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디지털홍수예보추진	
연 락 처	(044) 201 - 7551